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정보화사회 시대에 문화유산 향유 방식이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이 필요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2024. 5. 17. 시행)되었음.

이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개발하는 대학·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원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4. 2. 20. ~ 4. 1.) 실시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의4조(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개발의 지원신청서) 영 제10조의
13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개발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8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개발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설립연월일 년 월 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또는 소재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6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개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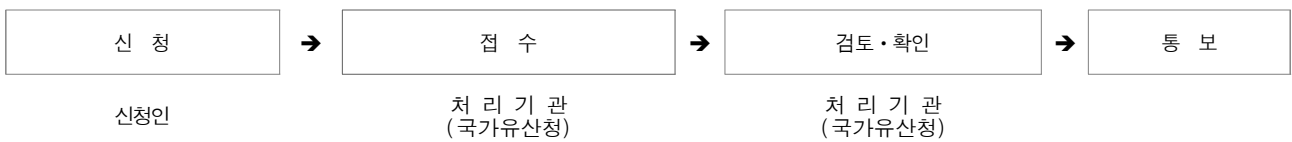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 또는 개발 계획서	수수료 없 음
	2. 최근 3년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 또는 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 현황	
	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 또는 개발 전문인력 현황	

210mm×297mm[백상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개발의 지원신청서) 영 제10조의13제2항에 따른 문화 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개발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8서 식에 따른다.